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[별표 5] <개정 2018. 6. 12.>

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(제68조 관련)

1.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.

연령 \ 중증요양상태등급	제1급	제2급	제3급
61세	평균임금 × (329/365 − 0.04)	평균임금 × (291/365 − 0.04)	평균임금 × (257/365 − 0.04)
62세	평균임금 × (329/365 − 0.08)	평균임금 × (291/365 − 0.08)	평균임금 × (257/365 − 0.08)
63세	평균임금 × (329/365 − 0.12)	평균임금 × (291/365 − 0.12)	평균임금 × (257/365 − 0.12)
64세	평균임금 × (329/365 − 0.16)	평균임금 × (291/365 − 0.16)	평균임금 × (257/365 − 0.16)
65세 이후	평균임금 × (329/365 − 0.20)	평균임금 × (291/365 − 0.20)	평균임금 × (257/365 − 0.20)

2.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.
3.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.